

규 정

의회사무국-915(2019.2.21.)호와 관련하여, 『순천시의회 포상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순천시의회 의장



2019년 2월 25일

순천시의회 규정 제14호

붙임 순천시의회 포상 규정 전부개정규정

순천시의회 포상 규정 전부개정 규정

순천시의회 포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의회 포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장 및 제2조의 포상대상자가 있는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추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제12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